

중소기업

여러분도 특허를 가질수 있습니다

21세기는 「지식」이 국가경쟁력을 좌우하고, 「지식경영」이 기업의 성패를 가름하는 글로벌 지식경제 시대가 될 것이다.

이에 정부에서는 21세기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대두되는 지식기반 경제구축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과 문화·관광사업과 같은 지식기반산업을 육성하고 전국민의 신지식화를 추진하는 것을 주요 국정지표로 정하고 경제개혁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

특허청에서는 향후 우리경제의 주체가 대기업이 아닌 고부가가치형 기술개발과 지식경영을 추구하는 중소기업임을 인식하고, 이러한 창의적 중소기업이 기업경영의 핵심자산으로 특허 등 지식재산권을 적극 창출 활용하는 것을 유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지식재산권 운동」을 추진하고 있다.

본문은 특허청에서 「중소기업 지재권갖기 운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작한 자료로 지식재산권에 대한 소개, 지재권관련 정부지원제도, 산업체재산권 정보이용, 특허관리 성공사례 등 다양하고 종합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 중소기업이 지식재산권 확보를 바탕으로 지식경영을 추구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I. 특허출원 왜 하여야 하는가?

특허는 머리가 좋고 학벌이 좋은 사람들만이 하는 것일까?

특허 등 지식재산권의 창출은 에디슨, 아인슈타인과 같은 천재들만이 할 수 있는것이 아니라, 학생 주부, 중소기업 근로자 등 일반인 누구나 일상생활 속에서 무엇인가 개선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으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미래학자인 톰 피터스는 '청소라는 직업을 표준화해 생산성을 높이고 그 결과 말콤 볼드리지 생산성 대상을 받은' 리츠칼튼 호텔의 여자 청소부를 지식근로자의 전형이라고 치켜 세운 바 있습니다.

그러면 특허를 출원하여 권리를 확보하면 어떠한 이득이 있는 것일까요?

▶ 첫째, 지식재산권을 바탕으로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 확보가 가능합니다.

특허 등 지식재산권은 권리자의 허락 없이 타인이 사용할 수 없는 「독점배타권으로 신용창출, 소비자의 신뢰도 향상과 기술판매를 통한 로얄티수입 등을 가능하게 해주는 주요 수단입니다.

▶ 둘째, 타인의 모방 침해 등에 다른 특허분쟁을 사전예방하거나 관련기술 특허권자와는 상호협력(Cross-License 등)을 통해 분쟁을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발명·기술개발이라도 특허 등 지식 재산권으로 권리화 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며, 먼저 발명했더라도 타인이 먼저 출원하면 자신은 권리 확보가 불가능 합니다.

따라서 자신의 발명·기술개발을 가장 빠른 시간내에 출원, 권리화하여 타인과의 분쟁을 사전예방하고, 타인의 권리를 무단 사용할 때는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 셋째, 막대한 기술개발 투자비를 회수할 수 있는 확실한 수단이며 확보된 권리 를 바탕으로 안정되게 추가 기술개발을 가능하게 해 줍니다.

지식재산권은 기술개발 결과에 대한 독점적 이윤을 보장해 줌으로써 기술개발 투자비를 회수할 수 있도록 해주며, 먼저 개발된 기초기술을 바탕으로 타인과 분쟁없이 추가 응용 기술개발이 가능하도록 해 줍니다.

▶ 넷째, 특허출원을 할 경우 벤처자금, 기술담보자금 등 정부의 각종 정책지원금과 세제지원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허출원을 하여 우수기술로 판정되거나 우수한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으면 특허청의 벤처기업 확인 추천을 받아 각종 벤처기업 지원 자금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특허권을 담보로 한국산업기술평가원 등에서 지원하는 정부 기술담보사업자금을 활용할 수 있고

특허권을 바탕으로 사업화 추진시 「특허기술사업화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산자부, 중기청등에서는 정부의 각종 정책자금 지원시 특허권 보유기업을 우대하고 있으므로 특허권 등 지재권을 보유하고 있으면 각종 정부자금 활용과 세제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이 「왜 특허출원을 해야 하는가」하는데 있어 이해기반을 넓이고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인식을 새롭기 위해, 특허 등 지식재산권의 창출활용을 측면시키기 위하여 특허 분쟁사례를 소개합니다.

[풀라로이드사(미) 대 코닥사(미)간의 즉석카메라 특허분쟁]

● 분쟁내용

폴라로이드사는 자사의 인스턴트 카메라와 필름에 대한 특허침해를 이유로 코닥사를 제소

- 결과 : 미 연방법원에서 분쟁 16년 만에 최종 결론
코닥사가 폴라로이드사에 8억 7천 3백만불 손해배상
※ 당시 폴라로이드사의 매출액은 2억불

● 평가

- 기술개발에 있어서 2위는 개발시차에 관계없이 기술전쟁에서 패배를 의미
※ 당시 양사의 기술개발 시차는 2개월에 불과
- 선진국 기업들은 기업경영의 최고 목표를 특허권 획득에 두어 기술독점을 통한 세계시장 석권 추구

[S 반도체 대 Texas Instrument사(미)간의 반도체 특허분쟁]

● 분쟁내용

- TI사가 한국의 S사와 일본회사 등 세계 19개 회사를 자사의 DRAM 특허침해를 이유로 미 ITC(국제 무역위원회)에 제소

● 결과 : ITC에서 TI 보유 특허권리에 대한 타사의 침해 최종 판정

- S사는 '89년부터 3년여 기간 소송비용 부담, 수출금지조치 감수, 패소로 인해 8,500만불 로얄티 지급
- 일본은 TI의 특허가 기본 특허임을 정확히 파악하고, 보유 개량특허와 Cross-License를 체결하여 7개사를 합하여 1억 3천 8백만불이라는 비교적 적은 금액으로 해결

● 평가

- 기술개발과 지재권 확보없는 단순 모방 재생산(Reverse-Engineering)으로는 시장 진출에 한계
- 이미 지재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이를 회피하기 위하여 대응할 수 있는 대안을 갖고 전략적으로 특허협상에 임해야 피해 최소화 가능
- 국내기업에게 기술개발과 특허관리의 중요성을 인식시킴

II. 특허출원을 하여 성공한 기업은?

다음에 소개되는 기업, 연구소, 개인발명가의 「특허출원 등 특허관리 성공사례」는 중소기업등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에게 지재권 창출, 출원 및 권리화의 중요성, 특히 특허출원의 필요성을 인식케 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합니다.

사례1. 중소기업의 성공사례

● 특허기술 및 분쟁 내용

- (주)상아프론테크(종업원 198명)는 중규모의 중소기업으로서 '전자렌지의 과열 방지 장치'를 제작 S전자에 납품하여 오던 중
- 동일품목을 일본 개인발명가(나시또 요시유키)로부터 기술도입하여 생산하는 국내 「코니사」로부터 특허침해를 했다는 경고장을 받음

● 특허관리 노력 및 결과

- 동사는 이런 상황이 제기될 것을 사전에 감지하고
 - 서울대학교에서 정년퇴임한 교수를 연구소장으로 초빙, 철저한 특허관리 (동제품 개발전에 이미 먼저 전세계에서 특허된 내용을 철저히 조사한 후 선행 특허에 저촉되지 않도록 회피 설계) 실시
 - 동 경고에 정면으로 대응하여 기술내용이 상이하다는 입증을 통해 특허분쟁을 완만히 해결
- 또한 '반도체 웨이퍼의 이송상자'도 외국 특허를 철저히 조사한 후 제품을 개발하여 특허분쟁 없이 년간 10억원의 수입대체 효과달성

● 평가

- 퇴임 교수의 보수(3,000만원/년)와 코니사의 과열방지장치의 특허 침해로 지불해야 할 예상 특허료(900만원/년)와 반도체 웨이퍼의 이송상자 제조기술 예상 특허료(3,000만원/년)를 대비하여도 특허 관리 결과가 이익이 되었으며 매출신장, 고용증진 등으로 인한 경제적 파급효과도 매우 컸음
- 이와같이 중소기업도 특허에 관심만 있으면 비교적 저렴하게 정년 퇴임 기술자 또는 정년 퇴임 학자를 활용하여 효율적인 특허관리 가능

사례2. 벤처기업의 성공사례

● 하이개인 안테나

- 경기도 반월공단 소재, 안테나·제기 분야 중소·벤처 기업
- 1970년대 이후 정보통신산업의 성장을 예측하고 집중적인 기술개발과 개발된 기술에 대한 산업재산권을 조기에 확보하는 전략으로 '98년 매출액 680억원, 수출 17만 불의 중견기업으로 성장
- '다른 기업에 없는 독특한 기술을 지닌 1등 기업만이 살아남는다.'는 신념으로 '79년 이후 매년 10여건의 특허를 출원

● 텔슨전자

- 특허왕국이라 불리는 텔슨전자는 특허출원 20건을 비롯해 총 60여건의 지식재산권을 출원하면서 창업 7년만에 연간 매출액 700억원대의 기업으로 성장

● 서부산업

- 어학학습기 닥터위콤으로 유명한 서부산업은 도산직전 특허기술로 기사회생 하였음

● 초음파 의료기기 전문업체 메디슨, 반도체 검사장비 전문업체 미래산업, 고주파 부

품업체인 KMW, 통신장비 전문회사 기산 텔레콤, 200여건의 산업재산권을 갖고 있는 교량부품의 선두주자 KR 등도 특허기술로 성공한 대표적 벤처기업임

사례3. 작은 아이디어 하나로 성공한 기업

● 콜라·맥주깡통의 따개 하나로 성공한 봉정산업

-아이디어 발굴

- 조성호 사장은 아내와 미국 여행중 아내가 콜라를 따다가 손톱이 부러졌던 일에서 아이디어 출발
- 따개와 깡통사이의 틈이 너무 좁기 때문이라는데 생각이 미친 그는 이를 개선하는 방안을 찾다가 아이디어 도출
- 기존 따개에 손가락을 집어 넣는 부위에 탄력성이 있는 철판을 덧대어 누르면 간격이 벌어지게 한 것이 아이디어의 핵심

-특허출원 등 권리화 결과

- 세계 60여개국에 특허출원을 마쳤고 국내외 업체로부터 특허권 실시계약 제의 쇄도

● 반디라이트 불펜을 세계 처음으로 개발한 세아실업

-아이디어 발굴

- 김동환 사장은 야간에 교통경찰간이 목과 어깨사이 전등을 끼워 어렵게 필기하는 것을 보고
- 불펜 끝부분의 형광물체를 이용, 밤에도 불을 밝혀 쓸 수 있는 반디라이트 불펜 개발

-특허출원 등 권리화 결과

- 한해 650만 달러를 외국에서 벌어 들임
- 세아실업은 현재 특허·실용신안 100여건 보유중

사례4. 특허담보, 기술담보대출로 성장한 기업

● (주)세라텍은 컴퓨터 주변기기와 통신기기에 사용되는 전자파 차단용 기본소자인 칩 비드 인더터 등을 70% 이상 수출하는 벤처기업

● '99년 초부터 컴퓨터에 대한 수출주문이 쇄도하는 바람에 설비를 늘려야 했지만 설비자금 조달문제 발생

-이때 이 회사는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이미 보증을 받은 상태여서 기술담보나 다른 방법으로 돈을 빌려야 했었음

● 이 회사는 보유중인 특허권 25건중 11건에 대하여 한국산업기술평가원의 기술평가를 거쳐 중소기업진흥공단에 담보를 설정하고 중소기업구조개선자금 13억원을 대출 받아 설비조달 문제 해결후 계속적 성장

● 평가

-우수한 산업재산권을 보유하고 있으면 물건에 대한 담보 없이 기술담보대출, 사업화

자금 등 정부와 금융기관의 각종 정책자금을 활용하여 성공 가능

사례5. 특허기술이전 성공 사례

● 폐타이어를 이용하여 특허를 취득한 백전호씨

● 특허기술

- 폐타이어 내부에 완충 스프링을 내장하여 충격완화 효과 극대화
- 각종 분리대에 설치하는 교통안전제품

● 특허기술 이전 · 매매

- 상품화에 어려움을 느낀 백전호씨는 한국 발명진흥회 특허 기술사업화 알선센터의 소개로 자금력과 기술력을 갖춘 중견기업 일경실업(주)에 특허권 이전

● 결과

- 백전호씨는 일경실업으로부터 특허권 이전 대가로 일시금 3천만원, 제품 공급가액 5%의 로얄티, 6개월간 100만원씩 지급 받기로 함
- 일경실업은 1년여의 기술개발후 상품화가 이루어져 전국에 양산 보급중

사례6. 대기업의 성공사례

● 특허기술

- 명 청 : 신규 세파로스포린계 항생제 및 그 제조방법
- 용 도 : 광범위 강력 항생제
- 권리자 : L회사

● 특허관리 결과

- 세계 제2위의 제약회사인 영국 Glaxo사에 특허와 제조기법(Know-How) 실시권 허여(정액 1,500만불, 경상료 순 매출액의 7% 계약)

사례7. 연구소의 성공사례

● 특허기술

- 김완주 박사팀이 개발한 쿠놀론계 항생제
- 연구기간 : 5년 ('87~'92)
- 연 구 비 : 총 7억원
- 연구동기 : 전 세계적으로 사용량이 급증하는데 반해 시장에 나와있는 상품의 수가 적고 약효검색이 한국적 실정에 비교적 간단

● 특허관리 결과

- 세계적으로 저명한 제약회사인 스미스크라인 비참사(영)가 이 항생제의 특허를 양수
- 시판때까지 단계적으로 2,100만불외에
- 매출액의 3~5%를 추후 별도로 지급한다는 조건

사례8. 개인 발명가의 성공사례

● 실용신안 기술

- 문방구, 사무실 및 상품포장 등에 사용하는 접착테이프를 임의의 길이로 조정하면서 간편하게 절단하는 접착테이프 절단기
- 권리자 : 오영석 (경기도 부천시 거주)

● 특허관리 결과

- 로얄티

- 양도금액 : 3,000만원 (일시불)
 - 매출액 (공장도 가격 : 5,000원 정도)의 4%를 매년 지급
- 년간 100만개 정도의 수요예상에 따라 년간 2억원 정도의 특허료 수입 예상

사례9. 상표관리의 성공사례

● 은성사 (낚시대 제조회사 : 중소기업)

- Silver Star : 등록불가 (많은 국가에 기등록)
- Silver로 자체상표 개발 : 세계 20여국에 출원등록 및 3,500만불 수출

● Bay Chemical Co. (사장 : 화학박사 배상철)

- 미국이민 10년동안 남부지역 한 대학교수로 재직
- 화공약품회사 설립 : Bay Chemical Co.(Bay)는 자기성인 배의 영문표기
- 독일의 Bayer가 미상표청에 자기회사 애칭인 Bay를 등록신청하였으나 미상표청에서 배상철씨의 선등록을 이유로 거절
- 독일의 Bayer와 배상철시 협상 : Bayer에서 150만불 지불후 양도받음

III. 특허, 산업재산권이란 무엇인가?

1. 산업재산권 : 특허, 실용신안, 의장, 상표

● 특 허

- 기술개발과정에서의 결과물 또는 생산 현장에서 발생하는 아이디어 등을 특허출원 할 수 있음
- 특허는 이전까지 없었던 물건 또는 방법을 최초로 발명하였을 경우 그 발명자에게 주어지는 권리임
- 특허에는 기본 · 원천기술에 대한 특허도 있지만 이미 개발된 기술을 더 연구 발전 시킨 주변 · 개량기술도 특허를 받을 수 있음
- 따라서 「공공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하거나 공중의 위생을 해할 염려가 있는 발명(예: 지폐위조기, 도박에 필요한 기구, 아편흡입기구 등)」을 제외하고 생산현장, 기술개발과정, 일상생활 속에 발생하는 대부분의 아이디어는 특허로 출원하여 보호받을 수 있음
- 특허관리의 보호기간 : 출원일로부터 20년

● 실용신안

- 이미 발명된 것을 개량하여 보다 편리하고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한 실용적인 물품에 대하여 주어지는 권리로 특허보다 한단계 낮은 기술로 인식됨
- 99. 7. 1부터 출원 후 3~6개월이면 권리를 확보할 수 있는 「실용신안 선등록 제도」 시행 이후 실용신안은 기술수명주기(Life-Cycle)가 짧은 기술을 보호받기 위하여 주로 활용됨
- 권리보호기간 : 출원일로부터 10년

● 의장

- 차량의 외형 디자인과 같이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물품의 형상을 보호해 주는 권리임
- 권리보호기간 : 등록일로부터 15년

● 상표

- 상표(Trae Mark) : 상품을 업으로서 실시하는 자가 자기의 상품을 타업자의 상품과 식별시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호, 문자, 도형, 입체적 형상」 또는 「이들과 색채가 결합한 것」에 대하여 보호해 주는 권리임
- 서비스표 (Service Mark) :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서비스업을 타인의 서비스업과 식별하기 위해 사용하는 표장 (광고, 금융 요식업 등 서비스업의 식별표시)
- 권리보호기간 : 등록일로부터 10년(10년마다 갱신 가능)

2. 어떻게 하면 권리를 빨리 확보할 수 있는가?

● 출원후 권리확보까지 소요시간 (99. 10월 현재)

- 특허 : 25개월, 실용신안 : 3~6개월, 의장 : 6개월, 상표 : 10개월

● 권리의 조기확보는 다른 사람의 모방판매 등으로부터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권리를 조기에 확보하기 위해서는

▶ 첫째, 출원을 다른 사람보다 먼저 해야 합니다.

아무리 훌륭한 발명·기술개발이라도 특허 등 지식 재산권으로 권리화 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며, 먼저 발명하였더라도 타인이 먼저 출원하면 자신은 권리화보가 불가능하므로 아이디어 단계나 기술개발 단계에서 먼저 출원하려는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 둘째, 출원단계에서는 실용신안과 특허를 동시에 이중출원 합니다.

특허와 실용신안은 그 구분을 명확히 하기 어렵고 동일기술은 특허와 실용신안으로 이중출원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출원인은 이중출원을 통하여 먼저 출원후 2년까지는 실용신안권으로 권리를 보호받고 2년 이후 장기간 안정된 권리는 특허권을 확보하여 보호받으면 됩니다.

▶ **셋째, 출원이후에는 우선심사제도를 활용하여 조기에 권리 확보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심사는 심사청구순서에 따라 진행되지만 「다른 사람이 모방판매하거나 기타 긴급처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타출원에 관계없이 우선심사하는」 우선심사제도가 있으므로 이를 활용하여 조기에 권리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우선심사 신청 대상

특히 실용신안 의장 등록 출원으로 심사청구 및 출원공개 또는 조기출원공개 된 것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것

- 제 3자가 업으로 출원된 발명을 무단실시하는 경우
- 방위산업분야 출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에 관한 출원,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기업의 출원, 산업기반기술개발사업 등 국가 신기술 개발 지원 사업의 결과물에 관한 출원, 해외출원으로 외국특허청에 절차가 진행중인 출원, 자기실시 또는 자기실시 준비중인 출원, 공해방지에 유용한 출원, 수출촉진에 직접 관련된 출원, 국가품질인증사업의 결과물에 관한 출원

3. 모방판매 등으로부터 권리 확실히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은?

●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등 권리가 확보된 경우에는

민, 형사적 법적 대응 또는 특허청의 산업재산권 분쟁조정 위원회의 조정등을 통하여 권리행사가 가능합니다.

민사상 법적 대응 방법으로는 보상금 청구권, 침해금지 청구권, 손해배상 청구권, 신용회복조치 등이 있고 형사상 법적 대응에는 고소에 따른 징역, 벌금형 등이 있습니다.

● 출원이후 권리확보까지 단계에서는

먼저 출원단계에서는 조속한 권리 확보를 위하여 실용신안과 특허를 이중출원 하고, 출원이후에는 우선심사 신청, 조기공개 신청, 보상금 청구권행사를 위한 서면 경고 등의 조치를 취합니다.

● 특허청에서는 권리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산업재산권에 대한 다툼이 있을 경우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하여 당사자간에 분쟁을 쉽게 해결하도록 하고 있고

국내 기업이 해외에서 모방판매, 상표도용 등으로 어려움을 겪을 경우 이를 해결해 주기 위하여 「해외 지식재산권 애로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모방상표 사용을 단속하기 위하여 검·경·시도공무원과 협동으로 단속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4. 출원시 애로사항 및 해결방법은?

● 중소기업 등이 특히 출원시 느끼는 애로사항으로는

출원 및 등록절차 등 산업재산권 제도에 대한 전반적 이해 부족, 변리 비용 부담, 특허정보 이용료 부담, 출원 및 등록료 부담 등입니다.

이에특히청에서는 다음과 같은 중소기업 「특허출원 지원 시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첫째, 출원 및 등록절차 등 산업재산권 제도에 대한 이해를 넓히기 위하여

「중소기업 특허관리 가이드북」 등 산재권 전반 안내 책자 발간·배포, 특허청 산하 국제특허연수부의 중소기업 인력대상 교육실시, 중소기업 요청시 심사관 파견 등을 통한 종합 지원사업 실시로 중소기업이 특허출원때 느끼는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으며, 향후 「1심사관-1중소기업체 자매결연」 등을 통하여 산재권에 대한 종합지원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특허정보화지원사업 : 중소기업 요청시 심사관 파견 등 지원사업 실시중
(특허청 심사조정과 ☎ 042-481-5401)

▶ 둘째, 출원료, 특허정보 이용료, 변리비용 등 특허출원과 관련된 경제적 부담완화를 위하여

99. 9월부터 출원료, 심사청구료, 최초 3년분 등록료에 있어 중소기업은 50%, 개인 및 소기업은 70%를 감면해 주고 있으며

중소기업의 특허정보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2000. 1월부터 인터넷 특허정보 (KIPRIS) 무료서비스를 실시하며

변리비용 부담완화를 위하여 특허청 지정 무료변리상담소를 운영하는 등의 제반조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IV. 특허청에서는 무엇을 도와주는가?

1. 중소기업 지식재산권 갖기 운동 추진

특허청에서는 국내 전체 중소제조업체(종업원 5인 이상, 총 91,324개)에서 1건 이상 산업재산권을 보유하는 것을 목표로 「중소기업 지식재산권 갖기 운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먼저 2000년 말까지 1건 이상 특허 또는 실용신안을 보유한

중소제조업체를 현재 4,000여개에서 10,000여개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지식재산권 갖기 운동의 주요내용으로는

▶ 첫째, 중소기업의 지재권에 대한 인식확산을 위하여

중소기업 지재권 갖기 운동 결의대회 및 세미나 개최('99. 10. 19), 전국 순회 지재권 대업계 설명회 개최, 지재권 연수 확대, 특허기술대전 등 행사 개최시 중소기업 포상비중 확대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지재권 설명회 등 행사에 참석하시면 심사관, 변리사 등으로 구성된 현장 도우미 (Help-Desk)의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둘째,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개발지원과 지재권 창출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정부 각종 기술개발 사업자금에 지재권 창출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도록 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의 직무발명 활성화 지원, 중소기업-특허청간 기술분야별 협의회 구성·운영, 1심사관-1중소기업 자매결연을 통한 선행기술조사서비스 등 종합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을 위하여 특허기술정보의 인터넷 무료서비스를 2000. 1월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 셋째, 출원 및 권리화 절차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출원료, 심사청구료, 등록료 등 수수료를 50~70% 감면해 주고 있으며, 해외 출원비용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에 대한 변리업무의 지원을 위하여 1변리사가 1기업에게 최소 1건 이상 무료변리를 실시하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지역별 특허청 지정 무료변리상담소 개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넷째, 지재권 활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특허기술 사업화 자금 확대, 특허출원에 의한 벤처기업 활성화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 특허를 출원한 중소기업에 대한 벤처기업 확인 추천

●특허청에서는 특허·실용신안·의장을 출원중인 기업이 벤처기업 확인을 받고자 원할 경우에, 특허기술정보센터의 출원기술에 대한 선행기술조사자료 등을 근거로 심사관이 출원기술에 대한 우수성을 평가한 후 벤처기업 지정에 필요한 증명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수한 산업체재산권을 보유하고 있으나 자금확보 등 사업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및 예비창업자의 특허·실용신안·의장 출원기술을 벤처기업으로 확인

가능한 우수기술로 확인·증명해 줌으로써 은행 등 각종 벤처자금 지원기관의 지원을 용이하게 하여 산업재산권의 창출 및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3. 출원료 등 수수료의 감면 및 해외출원비용 지원

● 중소기업 등에 대한 출원료 등 수수료의 감면

특허청에서는 중소기업, 대학, 정부출연연구소, 학생 등의 출원료, 심사청구료, 최초 3년분의 등록료를 감면하거나 면제해 줌으로써 개발기술의 출원 및 권리화를 촉진하고 있습니다.(단, 상표·서비스표 및 실용신안 기술평가 청구료는 면제 및 감면대상이 아님)

- 수수료 면제 대상 : 생활보호대상자, 국가 유공자와 그 유족 및 가족, 장애인, 학생
- 50% 감면 대상 : 중소기업, 대학, 정부출연연구소 등
- 70% 감면 대상 : 개인, 소기업

● 해외 출원비용 지원

특허청에서는 우수발명의 해외출원과 권리확보를 장려하기 위하여 내국인이 외국에 출원하는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출원비용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 신청자격 : 내국인으로서 외국에 특허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을 한 개인 또는 중소기업
- 지원대상 : 기술성 평가 결과 우수한 발명에 한하여 신청일 기준 과거 2년이내에 송금한 출원비용(PCT국제출원인 경우 국내단계가 진행된 경우에 한함)
- 신청기간 : 매년 1. 1. ~ 11. 30
- 신청서류 : 외국출원 증명서류 사본 1통, 외국출원비용 증빙서류 사본 1통, 신청인의 인감증명 1통, 발명의 상세한 설명·도면 및 청구범위가 기재된 출원서 사본 1부, 거래은행 구좌번호
- 지원기관 : 한국발명진흥회 발명진흥팀 (☎ 02-557-1077~8)

4. 특허기술사업화 자금지원

● 특허청에서는 산자부, 중기청과 공동으로 특허기술사업화자금을 2000년부터 지원 예정입니다.

『특허기술사업화』 지원은 우수 특허기술의 사업화 촉진을 위하여 특허기술을 세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여 사업화 자금, 기술개발자금, 창업지원, 기술·경영지도, 특허기술 거래·알선 등 각종 지원시책을 종합적으로 일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특허기술 사업화 지원대상 기술의 세가지 유형 및 지원방법

- 특허권자가 사업화를 희망하는 기술
특허기술 가치평가를 통해 신용대출, 기술담보대출, 사업화자금 등 자금지원, 경영·기술지원 등 추진
- 권리이전·판매를 희망하는 특허기술

특허기술거래 · 알선을 통해 권리양도 또는 실시권 협의 추진

-기술개발이 필요한 특허출원기술

기술개발자금 지원을 통해 사업화 또는 권리이전 · 판매 추진

● 특허기술사업화 자금 : 2000년, 330억 원

● 특허기술사업화 지원절차

-과제신청 : 특허기술사업화 희망자는 사업관리기관(한국 발명진흥회)에 신청서 제출

-과제선정 : 특허청, 산업자원부

-사업화 지원 : 산업기술평가원, 중소기업진흥공단, 산업디자인진흥원, 기술신용보증기금 등에서 특허기술사업화 자금 지원, 경영 · 기술지도, 디자인지도 등 각종 사업화 지원 실시

☞ 신청서류 등 세부적 지원사항은 추후 안내 예정

5. 특허기술 시작품 제작 지원 및 평가 지원

● 특허기술 시작품 제작 지원

특허기술 시작품 제작 지원사업은 「개인 또는 중소기업자의 특허 · 실용신안으로서 등록후 5년이내의 발명 · 고안」의 시작품을 제작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궁극적으로 특허기술의 사업화를 촉진 · 장려하고 있습니다.

-지원내용 : 개인별 3,000만원 범위내에서

· 영세발명가 및 학생 : 제작비용의 전액범위내

· 개인발명가 : 제작비용의 90% 범위내

· 중소기업자 : 제작비용의 80% 범위내

-신청시기 : 매년 1~2월 신문공고후 선정 지원

-신청서류 : 지원신청서 1부, 사업계획서 1부, 등록원부등본 1부, 공고공보사본 3부, 제작설계 도면 1부, 발명의 평가결과 사본 1부

● 특허기술평가지원

특허청에서는 개인 또는 중소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우수 특허기술의 사업성 · 기술성 평가」를 통하여 융자신청, 매매알선 등에 활용하도록 평가에 소요되는 수수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평가대상 : 개인 또는 중소기업의 특허 · 실용신안으로서 등록일로부터 5년이내의 발명 · 고안

-평가기관 :

· 기술성 평가기관 : 기술표준원등 17개 연구기관

· 사업성 평가기관 : 중소기업진흥공단, 기술신용보증기금, 한국산업기술평가원

-지원내용 : 평가수수료의 80%까지 지원(최대 3,000만원 이내)

-신청시기 : 수시접수. 단, 반기별 평가수수료 보조

-신청서류 : 평가수수료교부신청서, 특허기술평가사본 1부, 특허기술평가수수료 지급

영수증사본 1부, 등록원부등본 1부, 공고공보 사본 1부, 한빛은행 통장
사본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6. 기술개발시 산업재산권 진단 지원

- 특허청에서는 국내 중소기업이 연구개발 착수 또는 기술도입 이전에 특허전문가 집단(진단기관)으로부터 관련기술에 대한 산업재산권 사전 종합진단을 받음으로써 연구개발방향 설정, 중복 투자방지 등 효과를 도모하도록 하기 위하여 총 소요진단 비용의 50%를 정부에서 지원하는 「산업재산권 진단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대 1,500만원)

● 진단내용

관련기술의 국내·외 선행기술조사, Patent Map 작성, 시장 및 기술동향분석, 국내외 경쟁기업 실태분석, 연구개발 추진방향 제시, 문제 기술의 발굴과 특허분쟁에 대한 사전대응책 수립 등

● 신청시기 및 신청서류

- 신청시기 : 매년 4~5월 신문공고후 선정 지원
- 신청서류 : 진단과제 선정 신청서, 법인등록증 또는 사업자 등록증, 벤처기업 입증 서류(해당기관만), 중소기업기술혁신 개발사업 선정 확인서("), 지방자치단체장 추천서(")

7. 특허기술 거래시장 개설

- 특허청에서는 특허기술을 팔고자 하는 사람(발명가, 기업)과 사고자 하는 사람(기업, 자본가, 자금·보증지원기관)이 특허기술의 설명, 상담을 통해 기술을 매매·이전할 수 있도록 특허기술 실물거래 시장 및 인터넷상 사이버 시장(IP-MART)을 운영하고 있으며 향후 상설장터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 문의처

한국 발명진흥회 특허기술사업화알선센터(☎ 02-557-1077~8)